



SNS주간소식지

목포랑



대상포진 예방접종
대상자 확대 시행



여름철 재난 안전위험요소
집중신고제



비브리오패혈증
예방수칙 준수 안내



해양사고
함께 대응하면 줄일 수 있습니다





01

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시행



시행일 2026. 6. 1.(월) 부터

사업대상

- 기존 :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75세이상 심한장애인
- 확대 :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**(확대) 65세이상 심한장애인**

지원내용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

- 생백신 : 1회 접종 지원
- 사백신 : 2차 접종 시 백신비 100천원 지원(그 외 본인부담)

※ 본 사업으로 접종 지원을 받지 않은 자 중, 생백신을 맞은 자가 5년 이상 경과했을 때 사백신 지원 가능

접종장소 목포시보건소 (목포시 원산로45번길 5)

문의사항 목포시보건소 예방접종실 ☎ 061-270-4559



02

INFORMATION
정 보

비브리오패혈증 예방수칙 준수



비브리오패혈증은 매년 5~6월경 발생 시작,
8~9월에 집중 발생 주의 필요!!

“비브리오패혈증 예방수칙 준수로,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!”

※ 의심증상(발열, 오한, 피부병변)이 나타난다면? 비브리오패혈증을 의심하세요!!

간 질환자(만성 간염, 간경화, 간암 등), 알코올 중독자, 면역저하자 등은
고위험군으로 특별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.



어패류는 흐르는 물에 씻고
85℃ 이상에서 완전히 익혀먹기
(특히 고위험군은 어패류 생식 피하기)



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
바닷물과 접촉 금지



바닷물 접촉 후,
물과 비누로 노출 부위 씻기



바닷물 어패류는 가급적
5℃이하에서 저온 저장



어패류를 취급할 경우 장갑 착용,
요리한 도마, 칼 등은 소독 후 사용

여름철

재난·안전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



호우·
태풍

산사태
위험

폭염

물놀이
안전



2026. 6. 1. ~ 8. 31.



재난·안전사고 예방을 위한
위험요소는
‘안전신문고’로!

⚠ 참여대상 : 국민 누구나(외국인 포함)

⚠ 신고방법 : 안전신문고 **앱** 또는 **포털**
(www.safetyreport.go.kr)



iOS용 QR코드



안드로이드용 QR코드

해양사고, 함께 대응하면 줄일 수 있습니다!

**해양사고 발생 시
신속히 신고해(海) 주세요!**



「해사안전법」 제43조

① 누가 신고를 해야 할까요?

●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

누구라도 언제든지 사고를 목격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② 언제 신고해야 될까요?

● 해양사고가 발생한 즉시!

익수자 구조, 연료유 유출 차단 등 긴급조치를 우선 실시하고, 해양사고 발생 사실과 조치 경과 등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.

③ 어디로 신고해야 될까요?

● 관할 해양경찰서(119/122) 또는 지방해양수산청!

관할 수협 어선안전조업국,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
(044-200-5896~7)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④ 왜 해양사고를 신속하게 신고해야 하나요?

- 신속한 구조와 조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,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.

⑤ 어떻게 신고할까요?

① 일반 전화를 이용하여 선박명·사고위치·내용 등을 신고!

[해양사고 위치 문자알림 방법 이용]

해경에 신고전화 → 해경이 신고자에게 문자 전송 → 수신된 문자의 인터넷 주소(URL) 클릭 → 신고자의 현재 좌표(위도·경도) 자동 전송

② 선박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긴급조난신호 송출!

- 1) 어선 : VHF-DSC, SSB, V-PASS, 바다내비 등 활용
- 2) 일반선박 : VHF-DSC, SSB, SART, EPIRB 등 활용

[평상시 무선설비 관리 체크리스트]

- 출항 전 작동상태 확인
- 전원 공급상태 및 GPS 등 다른 장비와의 연결상태 점검
- SSB 송·수신상태 수시 확인
- 무선 안테나 파손여부 등 점검
- SART, EPIRB의 배터리 등 소모품 유효기간 상시 확인
- GMDSS 비상전력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



**어선, 낚시어선 운항자는
반드시 확인해(海) 주세요!**



① 입출항신고 절차 및 방법 준수

「낚시관리법」 제33조 / 「어선안전조업법」 제8조

● 낚시어선

승선자 명부를 수기 또는 낚시해(海) 앱을 이용해 작성하고, 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 또는 출장소에 신고!

수기 작성 시 해당 사본을 3개월 간 낚시어선 내에 보관하여야 합니다.

● 그 외 어선

V-PASS로 자동 출입항 신고!

단, 최초로 신고하는 경우이거나, 선원명부 등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출입항신고를 서면(전자적 방법 포함)으로 하여야 합니다!

② 선박위치(위도·경도) 동지 요령 준수

「어선안전조업법」 제21조

- 정기적인 위치통지는 특정해역 또는 출항지를 관할하는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에 보고!
→ 특정해역 및 조업자제해역의 정확한 구역은 「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」 제2조 참고